



서우회계법인 베트남

SEOU VIETNAM ACCOUNTING COMPANY LIMITED

NEWSLETTER

July 2019
Hanoi, Vietnam

CONTENTS

설립 후 개업준비단계 중 부가가치세 환급

..... 2

투자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수입된 기계 및 설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환급

..... 2

종업원 숙소로 주택 구입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적용 지침

..... 3

외국인 근로자 중 사회 보험적용대상

..... 3

취업허가 없는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용

..... 4

■ 설립 후 개업준비단계 중 부가가치세 환급

현행 부가가치세법(이하 "VAT")에 의하면, 개업준비단계의 기업 즉, 공제 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개업준비 중에 있는 기업은 투자 기간이 1 년 이상 지속되면 투자를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연간 매입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. 한편, 개업준비 단계 중 투자활동을 위해 사용된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누적 부가가치세가 VND 3 억 이상일 경우도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가능합니다.

2019 년 2 월 13 일, 국세청은 본 조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공문 475/TCTCS 를 발표하였으며 VND 3 억 이상의 개업준비활동에 사용되는 누적 매입 VAT 가 있는 개업준비 단계의 기업은 투자 준비기간에 관계없이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■ 투자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구입하기 위해 수입된 기계 및 설비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과 환급

이전 시행규칙 134/2014/TT-BTC 에서는 신규 또는 사업 확장이 있는 투자 단계 또는 운영 중의 기업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프로젝트의 고정자산을 위해 사용된 수입기계 및 설비의 수입부가가치세는 납부 기한의 연장(VAT 신고마감일 후 60 일 이내) 및 부가세 납부 없이 환급이 허용되었습니다.

1. 기업이 공제방식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등록하고
2. VND 1,000 억 이상인 수입 기계 및 설비로 인한 투자프로젝트이고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매출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일 것.

그러나, 2019 년 4 월에 위 내용을 폐지하는 시행규칙 18/2019/TT-BTC 이 발표되었습니다. 본 시행규칙은 2019 년 5 월 20 일부터 시행됩니다.

2019 년 5 월 20 일 이전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연장 및 수입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완료시에는 여전히 이전 시행규칙이 적용됩니다.

■ 종업원 숙소로 주택 구입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적용 지침

2019 년 2 월 26 일, 하노이 세무서에서 발표한 공문 7539 /CT- TTHT 에 따르면 회사가 종업원의 숙소로써 공동주택(회사가 건물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, 합법적인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으며, 은행을 통해 지불)를 구입한 경우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법이 적용됩니다.

1. 매입부가가치세

- 산업단지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위한 주택 및 병원으로서 고정자산을 형성하는 재화와 용역의 매입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
-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해 지정된 주택기준법을 따르는 산업단지 외부의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이를 위한 주택 매입 부가가치세는 전액 공제

2. 법인세

현행 고정자산관리 및 회계 하에서 회사의 장부에서 관리, 감독 및 회계 처리되는 재무부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구입아파트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 결정시 비용으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.

■ 외국인 근로자 중 사회 보험적용대상

2018 년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주재원들 대한 사회보험("SI") 기부를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143/2018/ND-CP 이 발표되고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SI 의 적용대상 직원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, 2019 년 3 월 18 일 노동부에서는 외국인에

대한 SI 기여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공문 1064/LDTBXH-BHXXH 를 발표하였습니다. 따라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베트남 내 주재원은 SI 대상입니다.

- ✓ 베트남의 적격 기관이 부여한 취업 허가증, 자격증 또는 면허증 소지
- ✓ 베트남 내 고용주와 무기한 또는 1년 이상 노동계약 체결
- ✓ 60세 및 55세 이하의 남성과 여성
- ✓ 본사파견직원이 아닌 경우

외국인 근로자는 베트남의 고정사업장으로 배정되기 최소 12개월 전에 베트남 밖에 위치한 본사의 관리자/경영이사/전문가/기술자로 근무하였다면 본사파견직원으로 자격을 얻습니다.

■ **취업허가 없는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용**

2019년 2월 15일 하노이 세무서는 베트남에서 취업허가 없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경비와 관련하여 공문 6351/CT-TTHT 를 발표하였습니다. 회사가 베트남에서 취업허가 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, 이들 직원과 관련된 모든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각각 공제가능비용과 매입부가가치세로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
*The above information is for reference only, not specific consulting advice.
For more detailed guidance,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our Office.*

SEOU VIETNAM ACCOUNTING COMPANY LIMITED

Hanoi Head office: 10th floor, Charmvit Tower, No. 117 Tran Duy Hung, Trung Hoa Ward, Cau Giay District, Hanoi

Tel: (+84) 24 3776 7049/50

Saigon branch: 3F CF Building 2Bis-4-6 Le Than Ton, Ben Nghe Ward, District 1, Ho Chi Minh City